

| | | |
|---|--|---|
|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 <h1>공 보</h1> <p>제844호 2022. 2. 9.(수)</p> |  |
|---|--|---|

| | |
|--------|-------|
| 선 결 | 기관의 장 |
| |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22-1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3
- 거창군 고시 제2022-20호 도로명주소고시 6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206호 공시송달공고 8
- 거창군 공고 제2022-211호 토석채취 허가신청 주민의견 수렴 공고 9
- 거창군 공고 제2022-21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0
- 거창군 공고 제2022-218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6
- 거창군 공고 제2022-219호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8
- 거창군 공고 제2022-220호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6
- 거창군 공고 제2022-221호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4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4일

거창군수

1. 목 적

- 노인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지정고시 내용

- 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호구역 지정구간 | 연 장 |
|--------|-----------------------|---------------------------|--------|
| 상매경로당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855-7 | 남상면 무촌리 831-20~무촌리 864-26 | L=400m |
| 청연경로당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0 | 신원면 덕산리 121-5~덕산리 214-2 | L=370m |
| 명산동경로당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32-2 | 남상면 전척리 산79-1~전척리 144-12 | L=290m |

※ 붙임 : 보호구역범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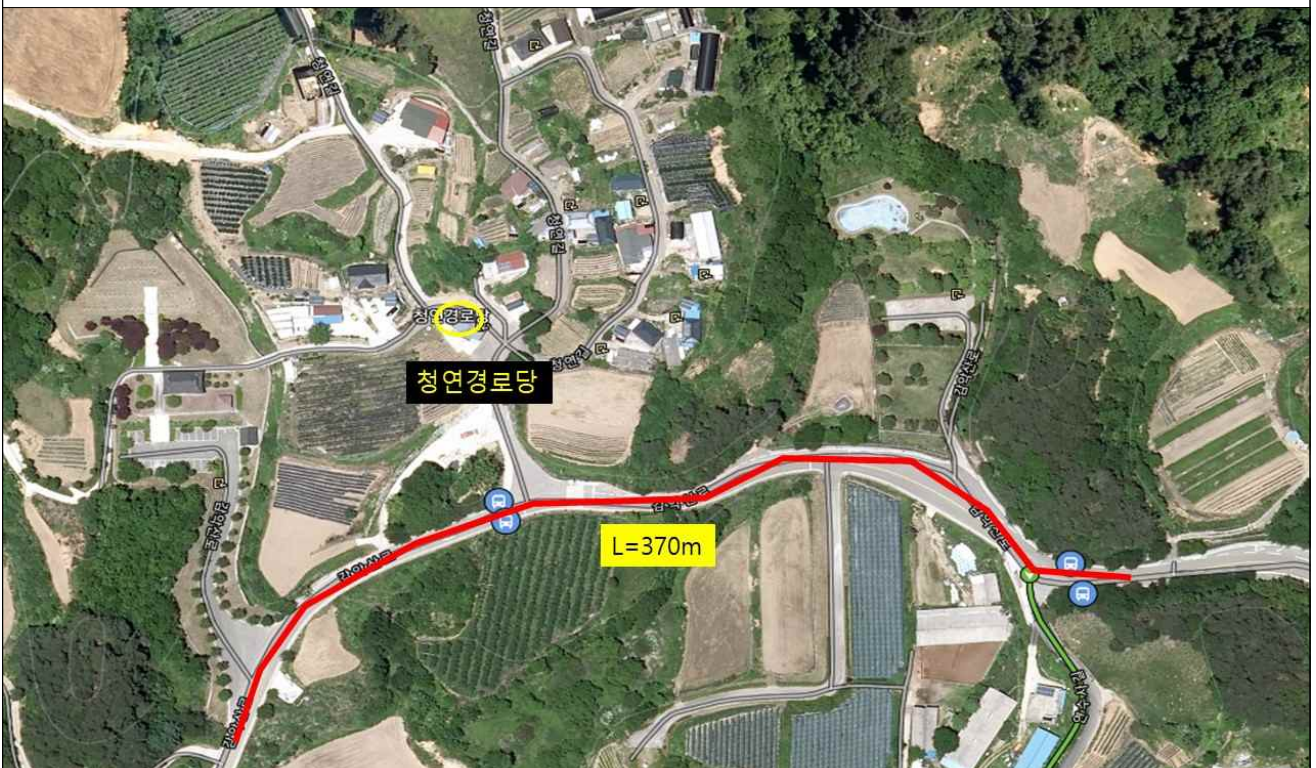
3.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

【붙임 1】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남상면 무촌리 831-20 ~ 무촌리 864-26(L=400m)



신원면 덕산리 121-5 ~ 덕산리 214-2(L=370m)



남상면 전척리 산79-1 ~ 전척리 144-12(L=290m)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3 등 3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38-54 등 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램) | | |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 일련 번호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이동사유 | 비 고 |
|----------|--|-----------------------------|----------|----------|------------------------------|------------|--------|
| | |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967, 967-1, 968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13 | 20220209 | 20090702 | 행정구역명(신원면+차황면) 반영 | 건물번호 부여 | |
| 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556-17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111-127 | 20220209 | 20190919 | 갈지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건물번호 부여 | |
| 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4-4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22 | 20220209 | 20160420 |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건물번호 부여 | |
| 4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38-60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38-54 | 20220209 | 20091228 |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건물번호 변경 | |
| 5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1길 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동길 40 | 20220209 | 20120620 |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건물번호 변경 |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원촌지구, 원노현지구, 무촌지구, 대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안내문을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2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2. 4. ~ 2022. 2. 18.(14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40-3322~2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

2022. 2. 4.

거 창 군 수

공 고

□ 제 목 : 토석채취 허가 신청 주민의견 수렴 공고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97번지 내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토석채취 허가 신청 내용

| 신 청 지 | | | | | 신 청 사 항 | | | | | | | 비 고 |
|-------|----|-------|-----------|--------|---------|--------|-----------|-------|-----------|------------|----------|--------|
| 면 | 리 | 지번 | 지적 (㎡) | 지 목 | 계 | 채취장 | 산물 처리장 | 진입로 | 관리 사무소 | 그밖의 시 설 | 완충 구역 | |
| 주상 | 성기 | 산 197 | 233,553 | 임 | 29,350 | 21,660 | | 1,620 | | | 6,070 | |

2. 토석채취 신청기간 : 2022.2. ~ 2024.6.30.

3. 채취용도 : 토목용

4. 채 취 량 : 184,248㎡

5.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22.2.7. ~ 2022.2.22.

○ 제출방법 : 서면제출(우편, 방문, 팩스)

-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0)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주상면행정복지센터(055-940-7390)

※ (팩스번호)055-940-3459 / 055-940-735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4.

거 창 군 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7일

거창군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2. 2. 7. ~ 2022. 2. 28.(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2. 2. 7. ~ 2022. 2. 28.(20일간)

다.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 지구명 | 구분 | 위 치 | 지정내용 | | | 지 정 사 유 |
|-----|----|-------------------------------|------|----|-------|------------------------------------|
|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남산1 | 당초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5-5일원 | 붕괴위험 | D | 3,313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 | 변경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5-5번지 및 산10번지 일원 | 붕괴위험 | D | 7,620 | |

※ 주상면 남산리 산10번지 일원 4,307㎡ 추가 지정

4. 정비계획

|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 (백만원) | 사업내용 | 비고 |
|-----|----------|------------|--|----------------------|
| 남산1 | 2022년 이후 | 770 | - 소일네일링공 설치 615개 - 비탈면 녹화 2,150㎡ - 수평배수공 설치 200m | 주상면 남산리 산10번지는 정비 완료 |

※ 사업내용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함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창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22. 2. 28.까지

라. 보내실곳 :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바. 연 락 처 : 전화 055-940-3652, 팩스 055-940-6952

7. 기타사항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등에 게재

- 붙 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형도면(당초) 1부.
 3. 지형도면(변경) 1부. 끝.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524(2021.10.14.)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9.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시설: 환승형 공영차고지)
 - 명 칭 : 북상면 환승형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종 류 | 위 치 | 사업규모(㎡)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결정면적 | 금회시행 면적 | | |
| 주차장시설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일원 | 2,673 | 2,673 | 경고 제2021-524호 (2021.10.14.) | |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면적(㎡) | 소유자 |
|-----|---------|----------|----|---------|-------|---------------|
| 1 | 북상면 갈계리 | 1488 -1 | 답 | 141 | 141 | 거창군, 임*하, 임*형 |
| 2 | " | 1488 -2 | 답 | 1,263 | 1,263 | 거창군 |
| 3 | " | 1488 -14 | 답 | 27 | 27 | 거창군, 임*하, 임*형 |
| 4 | " | 1488 -18 | 답 | 615 | 615 | 거창군 |
| 5 | " | 1488 -17 | 답 | 51 | 51 | 거창군 |
| 6 | " | 1488 -16 | 답 | 114 | 23 | 경상남도 |
| 7 | " | 1488 -15 | 답 | 97 | 97 | 거창군 |
| 8 | " | 1484 | 구 | 1,743 | 144 | 국(농수산부) |
| 9 | " | 1488 -12 | 도 | 239 | 239 | 경상남도 |
| 10 | " | 1433 -2 | 도 | 165 | 2 | 국(건설부) |
| 11 | " | 1488 -13 | 도 | 13 | 13 | 경상남도 |
| 12 | " | 1488 -8 | 도 | 182 | 58 | 경상남도 |
| 합 계 | | | | 4,650 | 2,673 |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안 제2조)
- 나. 골목형상점가 신청(안 제3조)
-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4조)
- 라. 골목형상점가 취소(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2) 전화번호 : 055)940-3683, FAX : 055)940-3349

3) 전자우편 : storline@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직인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의 2(정의)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방향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제7조)
-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을 정함. (안 제8조)
-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을 정함. (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2. 7. ~ 2022. 2. 28.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라. 전화 055-940-3505, 팩스 055-940-3759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4.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한 무료로 제공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사업
2. 자원순환 육성·지원사업
3. 자원순환 인식 확장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

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지방자치법 제28(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공고 제2022- 221호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정함. (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등
- 자발적 협약 체결의 내용을 정함. (안 제6조)
-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7조~제8조)

○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2. 7. ~ 2022. 2. 28.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라. 전화 055-940-3505, 팩스 055-940-3759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나. 군의회
 - 다. 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8에 따라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원 상감악(20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신원면 구사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신원 상감악(203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신원 상감악(203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837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6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 편입면 | 소유자 | | 소유자 이외 권리자 | | | 비고 |
|----|---------|-------|----|-------------------|-------------------|-----------------------------------|----------|------------|----|------|----|
| | | | | 면적 | 적 | 주소 | 성명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
| | | | | (m ²) | (m ²) | | | | | | |
| | 합계 | | | 440,387 | 6,192 | | | | | | |
| 1 | 신원면 구사리 | 산16-1 | 임 | 494 | 363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57* | 김*주 | | | | |
| 2 | 신원면 구사리 | 산12-1 | 임 | 358,381 | 56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향교로 16*, 10*동 16**호 | 김*순 | | | | |
| 3 | 신원면 구사리 | 산15 | 임 | 1,786 | 7 | 합천군 상백면 울리 | 정*찬 | | | | |
| 4 | 신원면 구사리 | 산12-3 | 임 | 6,909 | 267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82* | 유*조 등 2명 | | | | |
| 5 | 신원면 구사리 | 산14 | 임 | 2,182 | 2,182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 | 한*수 | | | | |
| 6 | 신원면 구사리 | 산8-2 | 임 | 19,836 | 365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세안길 5*-1* | 정*숙 | | | | |
| 7 | 신원면 구사리 | 산8-1 | 임 | 7,201 | 38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상감약길 44*-4* | 임*나 | | | | |
| 8 | 신원면 구사리 | 산8-5 | 임 | 15,399 | 926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 10*동 6**호 | 이*기 | | | | |
| 9 | 신원면 구사리 | 산8-7 | 임 | 10,636 | 348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 50*동 20**호 | 박*창 | | | | |
| 10 | 신원면 구사리 | 산7-2 | 임 | 8,190 | 22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87* | 유*성 등 3명 | | | | |
| 11 | 신원면 구사리 | 산7 | 임 | 7,162 | 97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87* | 유*성 등 3명 | | | | |
| 12 | 신원면 구사리 | 산6 | 임 | 237 | 23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7*, 10*동 18**호 | 최*철 | | | | |
| 13 | 신원면 구사리 | 산6-1 | 도 | 280 | 280 | 남상면 임불리 | 박*원 | | | | |
| 14 | 신원면 구사리 | 산5 | 임 | 1,255 | 57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가 3*-*, 10*-20* | 도*락 | | | | |
| 15 | 신원면 구사리 | 산5-1 | 도 | 256 | 256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가 3*-*, 10*-20* | 도*락 | | | | |
| 16 | 신원면 구사리 | 산4 | 임 | 183 | 183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82* | 유*조 | | | |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기철거 및 비용지원을 통해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0.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2. 10. ~ 2022. 3. 10. (29일간)
3.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사업물량

| 구분 | 주택 슬레이트 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
|----|------------|---------|-------------|
| 물량 | 350동 | 36동 | 31동 |

6. 지원기준

○ 지원 분야별 기준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을 포함
- 비주택 철거·처리 : 주택부지 외의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
- 주택 지붕개량 :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은 개량지원 가능하며, 비주택은 개량지원 불가

○ 미등재(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붕개량 지원 가능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예상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철거된 경우(증빙자료 지자체에 제출)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7. 지원금액

| 구 분 |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 | 주택부지 외 |
|------------|-----------------------|------------------------|---|
| | 주택 철거·처리 | 주택 지붕개량 | 면적 200㎡ 이하인 측사·창고 철거·처리 |
| 우선지원 가구 | 1동당 전액 지원 | 1동당 10,000천원 한도내 지원 | · 건축용도가 측사·창고인 건축물로 1동당 200㎡ 이하 전액 지원 |
| 일반가구 | 1동당 3,520천원 한도내 지원 | 1동당 3,000천원 한도내 지원 | |

※ 초과분은 자부담

8. 대상자 선정 기준

| 구 분 | 우 선 순 위 |
|----------|---|
| 주택 철거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작은 규모 우선 지원) |
| 지붕 개량 | 우선지원가구 (7동)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 | 일반가구 (29동) |
| 비주택 철거 | 작은 규모 우선 지원 |

※ 신청수량에 따른 예산 내 사업량 변동 가능

9.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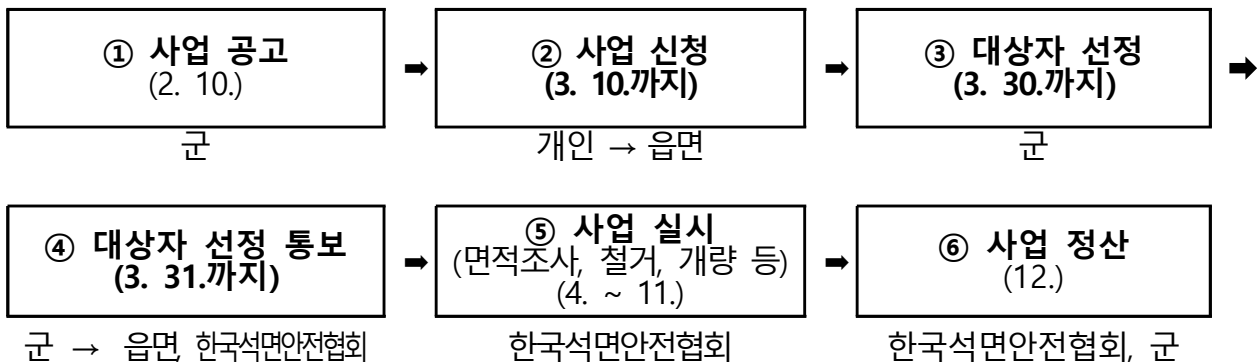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이행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1부.
-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해당) 1부.

- 소유권확인 가능 서류(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해당하며, 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등)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빙 서류(우선지원가구인 경우 해당, 수급자 증명서 등)

10. 사업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급
- 개인이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슬레이트와 무관한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은 신청자 자부담 처리
- 신청자 본인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11. 추진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

12.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가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신청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선정 배제
- 동일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3)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이행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실확인서(미등재(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1부.
 5. 사실확인서(건축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1부.
 6. 포기서 1부.
 7. 참고자료(기준중위소득표) 1부. 끝.

[붙임1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 | | | | |
|--|--|-----------|------|------------|------|
| 신청자 현황 | 성 명 | | | 연락처(h.p) | |
| | 소재지 (현재 거주지) | | | |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 | | | |
| | 건축연도 | | | 슬레이트 면적(㎡) | |
| | 건축 연면적(㎡) | 계 | 주건물 | 부속건물() | 기타건물 |
| | | | | | |
| | 관리유형 | 자가□, 임차□ | 거주현황 | 거주□, 빈집□ | |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 | | |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 | | | |
| 지원신청 내용 |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 | | |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p>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p> <pre> graph LR A[지원신청서 제출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 B[지원대상 선정 지자체] B --> C[공사업자 선정 지자체] C --> D[면적조사를 포함하여 공사 등 수행 선정된 공사업자] D --> E[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지자체 → 공사업자] </pre> </div>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p>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 | |
| <p>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p> | | | | | |
| 거창군수 귀하 | | | | | |
| 첨부서류 | <p>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p> | | | | |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서식의 첨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 | |
|----------------------|--|-----|--|
| 성 명 | | 소재지 | |
| 위치도 | | | |
| 사진 현황 | | |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2 서식]

사업이행 동의서

사업명 : 2022년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사업명:)

성명 :

주소 :

연락처 :

위 본인은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됨에 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사 실 확 인 서

○ 건축물 주소 :

○ 실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기타()

| 건축물 용도 | 소유자 | 면 적(m ²) | 건축연도 | 비 고 |
|--------|-----|----------------------|------|-----|
| | | | | |

※ 반드시 소유권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관계 :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첨부

○ 건축주와 신청자 상이한 이유 :

건축주 사망, 상속등기과정, 기타 (사유기재:)

상기 본인은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관련자(상속권자 등) : (인)

거창군수 귀하

※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모두의 철거 동의서 징구

[붙임6 서식]

포 기 서

신청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고자 본 포기를 제출합니다.

포기사유 (해당란에 “V”표시)

처리 및 지붕개량 자부담금 , 사업시기,
기타 (사유 :)

2022년 월 일

위 포기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7 - 기준중위소득표]

○ 기준순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 | 128,904 | 115,883 | 129,865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 | 165,933 | 162,458 | 168,030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 | 202,170 | 210,639 | 205,161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 | 238,812 | 257,289 | 242,816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 | 274,791 | 302,469 | 280,079 |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 | 306,064 | 340,666 | 313,831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 | | 345,236 | 384,055 | 358,998 |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 | 375,714 | 414,625 | 393,201 |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 | 415,948 | 458,199 | 447,194 |